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32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구자근

이달희 • 조승환 • 김소희

배준영 • 이종배 • 조은희

김기웅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자금 차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 및 한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10의 제목 "(회계처리기준)"을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직전 회계연도 말의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4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이사회, 감사 및 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회계감사 적용례)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	제112조의8(사업) <u>①</u>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3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u>국</u>	<u>자</u>
<u>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u>	<u>금 차입</u>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	
금 차입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 및 한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10 <u>(회계처리기준)</u> (생	제112조의10 <u>(회계처리기준 등)</u>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신 설></u>	② 직전 회계연도 말의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은 4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신 설>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의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1주일 전까지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이사회, 감사 및 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